

# 호가 일괄취소 제도 등 증권시장 거래안정화 장치도입 및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 등 제도 시행 안내

## I 개 요

- 한국거래소(이사장 최경수)는 증권시장의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위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'16.6.27일부터 시행키로 함
- 또한 저유동성종목에 대해 호가집중을 통한 안정적 가격형성과 유동성 개선을 위해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도 '16.6.27일부터 시행예정
- \*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 '15.11.4일 금융위원회 승인

## II 주요 개정내용

### 1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

※ 호가 일괄취소(Kill Switch) 및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주식뿐만 아니라 ETF, ETN, ELW, 수익증권 등에 적용되는 제도임 (채권, 신주인수권증권·증서 제외)

#### < 호가 일괄취소(Kill Switch)제도 도입 >

- (개념) 알고리즘거래계좌에서 착오주문 발생시,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여 손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
- (신청방법) 증권사가 회원시스템 또는 비상단말기(회원증권단말) 등을 통해 알고리즘거래계좌의 미체결 호가에 대한 일괄취소 및 추가 호가접수 차단 신청
- (처리 및 해제) 거래소는 해당 계좌 모든 종목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 및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하고, 회원은 발동 후 10분경과 후 부터 동 조치에 대한 해제 신청 가능

## <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도입 >

- (개념)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대규모의 착오매매에 대하여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
- (구제 신청) 착오회원이 회원시스템이나 비상단말기 등을 통해 착오매매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 신청하고, 거래소는 지체 없이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공표
- (구제 기준)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\*(복수종목 포함)이면 신청이 가능하고, 이 중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 $\pm 10\%$ 를 초과하는 체결 분만 그 결제 가격을  $\pm 10\%$ 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제 (ELW는  $\pm 15\%$  초과시  $\pm 15\%$ 로 구제)
  - \* 주식시장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, 상장지수증권시장,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또는 수익증권시장별로 각각 산출
  - 다만,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거래 및 시장조성호가로 체결된 거래의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
- (구제 결정) 거래소는 착오발생 익일 17시까지 구제여부 결정 및 공표

## 2 저유동성종목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시행

- (대상종목) 저유동성 종목\*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
  - \*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, 스프레드 3tick 초과
- (체결주기)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,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

□ (평가시기) 연례평가\*가 원칙이나, 상장법인의 액면분할, LP계약 또는 유동성 개선\*\*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익월부터 접속매매 전환

\* 매년 9월말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유동성을 평가하여 초저유동성종목을 선정하고 익년도 1년간('16년에는 약 6개월간 적용)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적용

\*\*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로 유동성이 개선된 종목

○ 단일가매매대상종목\*은 시행전일(6.24일) 장종료 후 KIND공시 및 종목 정보에 포함하여 회원사 송신예정

\* 단일가매매대상종목으로 공표된 종목(109개)중, 시행전일(6.24일)까지 액면분할 시행, 유동성공급(LP)계약 시행 또는 유동성 개선 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

### 3 주식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세칙규정 정비

□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(장종료 15시→ 15시 30분)에 따라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변경

구 분	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시간외 시장* (장종료후)	시간외증가매매	15:00~15:30 (30M)	<b>15:30~16:00</b> (30M)	순연
	시간외 단일가매매	15:30~18:00 (2H30M)	<b>16:00~18:00</b> (2H)	30분 단축
	시간외대량 ·바스켓매매	15:10~18:00 (2H50M)	<b>15:40~18:00</b> (2H20M)	

\* 대상증권: 주권, DR, ETF, ETN

## Ⅲ 기대효과

### ①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

○ 가격제한폭 확대 및 알고리즘거래의 증가 등으로 착오주문시 손실폭이 크게 증가할 우려에 대비하여 증권시장 매매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후구제제도로서 기대

- 대규모 착오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전체의 리스크로 전이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

## ② 저유동성종목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시행

-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 높은 저유동성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방식 적용을 통해 가격안정화 기대
- 투자자에게 적정가격으로의 거래기회를 제공하여 가격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 절감을 기대
- 단일가매매를 통한 변동성 완화 및 거래편의 제고는 가격발견기능을 개선하여 Valuation에도 긍정적인 영향 기대

### Ⅲ

### 시행시기

-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및 저유동성종목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시행 : '16.6.27일
  - 회원시스템 등 장애시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한 정정, 취소 및 신규호가 제출은 금년 하반기 중 검토 예정
- 매매거래시간 연장 시행 : '16.8.1일

※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krx.co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